장애인권리보장법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42

발의연월일: 2024. 7. 9.

발 의 자:김예지·한지아·장동혁

강민국 • 백종헌 • 송석준

김형동 • 박덕흠 • 조정훈

최수진 · 김승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재 장애 관련 법령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측면에 집중되어 있고, 장애의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하는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UN CRPD)는 2014년과 2022년 대한민국 정부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우리나라의 의료적 모델 채택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적절한서비스와 지원에 접근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또한, 2000년 이후 다수의 장애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으나법률 간 연계성 및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의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국제적 흐름과 장애 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 등 장애인의 욕구 를 반영한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 률 간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갖춘 새로운 기본법으로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아울러 장애인의 권리와 국가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 정책이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장애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여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의 추구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장애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을 통하여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 나. '장애'의 정의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반영하여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하여 이른바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함(안 제3조).
- 다. 존엄권과 평등권, 자기결정권, 참정권, 자립생활 권리 등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26조까지).
- 라.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주요정책을 수립,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

- 리 소속으로 장애인정책위원회를 둠(안 제29조).
- 마. 법령, 예산 및 기금 사업 등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장애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함(안 제36조).
- 바.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 (안 제38조).
- 사. 장애아동, 장애노인, 중복장애인 및 소수유형장애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장애여성,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규정과함께 체계적으로 정비함(안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 아. 정보공개,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설명 및 상담,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9조).
- 자.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및 권한위임 등에 관한 보칙 규정을 두고,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벌칙은 두지 아니함(안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을 통하여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차별과 배제 없이 권리를 존중받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장애"란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 과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 2. "장애인"이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3. "장애인 정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으로서

제2호에 따른 장애인과 관련된 제반 정책을 말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필요한 장애인 정책을 수립·실시하고, 법제(法制)·재정과 관련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연령, 성별 특성 및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욕구에 적합한 시책을 추진하여 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권리 옹호 및 구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행의 관점에서 장애인 정책과 계획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국민의 책임) ① 모든 국민은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

다.

- ②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 등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모든 국민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장애인의 권리보 장 및 실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장애인의 날) 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장려 및 권리증진을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 의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주간에 제1항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실시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 제7조(국제협력) ① 국가는 장애인과 관련된 국제조약의 체결 또는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있어서 장애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국제적 평화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장애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장애인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인의 권리보장

- 제9조(존엄권) 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 ② 누구든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신체적, 정신적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유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평등권)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를 갖는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유형의 차별에 대하여 동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자기결정권) ① 장애인은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하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누구든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배제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따라 「사회보장기 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 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 여야 한다.

- 제12조(참정권) ①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공적 업무를 담당할 기회를 누릴수 있는 권리가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정치참여권이 보장되고 공적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접근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설비를 설치하고,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수어통역 ·안내보조. 선거용 보조기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각 정당은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일정비율 이상은 장애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무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거나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3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의 결정 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

- 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14조(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권리) ① 장애인은 기초적인 생계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부담을 해소하고 장애인이 적절한 수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소득보장,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5조(직업선택권) 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업을 선택하고 일할 권리가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직장 내에서 장애인의 평등한 근 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

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이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 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 유할 수 있다.
- 제16조(안전권) ① 장애인은 신체의 자유 및 생명과 안전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이하 이 조에서 "학대 등"이라 한다)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갖는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 등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학대 등의 예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포함해 비상재해·재난·감염병 등에 대비하여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 및 접종·관리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예방을 위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마련할 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장애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여야 한

다.

- 제17조(건강권) ① 장애인은 최적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 향상 및 의료접근성 보장 등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재활을 받을 권리) ① 장애인은 신체·정신·사회 및 직업 능력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절한 훈련 및 재활을 받을 권리가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건, 고용, 교육, 체육 및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종합적인 훈련과 재활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제19조(자립생활 권리) ①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및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
 - ④ 장애인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자신의 주거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정책과 주택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성별·연령 및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별 욕구에 맞는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 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주택의 구입자금·임차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의 지원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0조(교육권) ① 장애인은 장애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 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⑤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인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修學)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21조(이동 및 접근권) ①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 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 개선과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동 및 시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기기 지원 및 인적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동편의시설 확대와 인식개선을 위한 지 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 안내 보조, 전기통신, 방송시설 등 인적·물적 제공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디자인의 연구, 개발, 확산 및 이용촉진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임신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장애여성에게는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2조(지식 및 정보 접근권) ① 장애인은 자신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

국수어 통역 및 문자·자막서비스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 및 문자·자막서비스와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3항과 제4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시청각장애인 (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 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 음성도서,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고,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 양성・파견, 장애인 및 복지 지원 제공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제공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3조(문화향유 및 예술활동에 관한 권리) ① 장애인은 문화향유 및 예술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화, 전시관, 극장, 박물관과 전시 및 공연

- 등의 행사에 장애인의 관람·참여·향유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예술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4조(체육활동에 관한 권리) ① 장애인은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자유롭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활동의 활성화와 참여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지원, 운동경기 지원, 체육동호인조직 육성,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개발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 및 활용,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재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지원하여야 한다.
- 제25조(관광·여행 및 여가활동에 관한 권리) ① 장애인은 관광·여행 및 여가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 및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놀이기구·온라인프로그램·기타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이용, 접근 가능하도록 수련시설,

체험시설, 자연학습시설, 휴양시설, 여가교육시설, 여가학습장 등을 개선하거나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26조(사법 접근권) 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 조사, 증인 참여를 비롯한 모든 사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② 국가는 장애인이 사법 조사, 증인 참여를 비롯하여 필요한 사법적절차에서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과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경찰과 교도 관을 포함하여 사법, 행정 분야 공무원을 훈련하여야 한다.

제3장 장애인정책 추진체계

- 제27조(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내외 장애인 관련 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
 - 2. 장애인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 3. 장애인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
 - 4. 장애인정책의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 5. 장애인 권리보장의 실태 및 개선과제

- 6. 장애인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및 운용방안
- 7. 장애인 정책 전달체계의 구성과 역할
- 8. 그 밖에 장애인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항 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장애인정책지역계획)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정책지역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역계획은 종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 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추진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전한다.
- 제29조(장애인정책위원회) ①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주요정책을 수립·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 1.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종합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 3.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 4. 장애인정책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5. 교육, 고용, 문화, 체육, 이동 및 접근성, 자립지원 등 장애인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6. 장애인정책의 평가 및 점검, 개선에 관한 사항
 - 7. 장애인 정책 전달체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8. 장애인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
 - 9. 장애인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 · 조정에 관한 사항
 - 10. 지역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 11. 장애인정책의 개발 연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12. 장애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13. 장애인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 14.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소속 직원의 출석, 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제2항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장애인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장애인정책책임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 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이하 "정책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 할 수 있다.
 - ② 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지역장애인정책위원회) ①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의 기획
 ·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
 치단체에 지역장애인정책위원회를 둔다.
 - ② 제1항의 지역장애인정책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2조(전달체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 잡힌 장애인 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 전달체계의 효과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장애인 정책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 전달체계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장애인 정책 대상별ㆍ기능별 전달체계 간의 통합 가능성
 - 2. 장애인 정책 전달체계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
 - 3. 장애인 정책 전달체계에 있어 공공과 민간과의 협력 및 연계
 - 4. 그 밖에 효과적인 장애인 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3조(종사자 양성 및 교육·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권리보장 및 사회통합 증진을 위하여 전문자격 제도를 운영하는 등 전 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소,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훈련 등에 필 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권리보장 및 사회통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의 내용·방법·절차·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장애인 권리보장의 실태를 평가하고, 장애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의 장,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통계 및 지표의 구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권리보 장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통계를 수집·관리하

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수집에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 관련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부처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장애인의 생애주기 및 장애 유형 등에 따른 욕구의 충족, 장애인의 권리실현 수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매년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통계, 제3항에 따른 지표의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6조(장애영향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사업(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 ·총리령·부령)
 - 2.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포함된 세출예 산사업
 - 3.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기금사업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 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영 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 받은 정책에 대하여는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시행 중인 법령
- 2. 대상 정책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장애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 3. 대상 정책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장애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장애인 권리와 차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 ③ 장애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장애유무를 구분한 통계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영향평 가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장애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영향평가 실시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 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영향평가 결과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령 및 대상정책에 관하여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 ⑧ 보건복지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영향평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 재출연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2. 제38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
- 제37조(장애인 정책연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평가 및 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수 있다.
- 제38조(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조사·연구·평가 및 정책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보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보장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단위에 지원을 둘 수 있 다.
 - ④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지원
 - 2.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장애인정책 정보의 수집·분석·관리·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 3. 통계 및 지표의 구축 및 관리 지원
 - 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및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개발ㆍ지원
 - 5.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 장애인 편 의증진 사업 지원
 - 6. 장애영향평가 지원

- 7.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 8. 장애인 권리보장 및 장애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의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 및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관련 법률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 9.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제도·정책·서비스 등의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지원
- 10.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 개발 및 협력사업 지원
-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 원할 수 있다.
- ⑥ 보장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장애인의 권리 실현

- 제39조(장애아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적으로 고려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과 동등한 수준의

- 교육, 건강, 문화, 여가, 스포츠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을 성폭력, 가정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0조(장애노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노인의 권리 증진과 인 권침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노인이 소득, 돌봄, 건강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받고, 문화, 여가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 제41조(장애여성) ① 장애여성은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모든 결정에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의 모성보호와 보육 여건 향상, 건 강유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및 고용 안정 등을 위하여, 학습, 직업교육, 장애여성에 적합한 노동환경 조성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성매매·가정 폭력·학대 등으로 부터 장애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2조(중증·중복·소수유형 장애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지원 등을 평 생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두 종류 이상의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이 욕구에 적합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생빈도가 낮은 소수 유형의 장애인이 배제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장애를 포괄하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3조(장애인 가족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제44조(정보의 공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하여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이 를 홍보하여야 한다.
- 제45조(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설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권리보장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권리나 의무를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6조(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상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권리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 제47조(사회적 인식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고취하며,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하는 데 필요한 교육, 공익광고 등 홍보 및 그 밖의 인식제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매체의 장애인 차별적 내용이 개선되 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장애인 평등의식이 확산되도록 시 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고, 장애인 권리증진 등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국민인식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48조(홍보영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12호의 전광판방송사업자에 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전광판으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제3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제49조(디지털 기술의 활용)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편의 증진 등을 위한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고 장애인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디지털 기술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디지털 교육·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 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관련 디지털 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50조(새로운 제도의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권리 증 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장애인 권리보장 등에 관한 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1조(단체의 보호·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52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① 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이하"협의 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같은 법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53조(권한위임)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 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 지사"라 한다)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재활원

-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그 일부를 위탁할수 있다.
- 제54조(비밀 누설 금지) 보건복지부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과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 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하여 서는 아니 된다.
-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보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 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② 제5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이 법에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3조(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장애인복지법」제10조의2에 따라 수립·시행된 장애인정책종 합계획 및 사업계획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시행된 것으 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및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는 제29조의 개 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제11조에 따라 구성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및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위원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 및 장애인정책실무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본다.
 -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 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정책 위원회의 심의·조정으로 본다.
- 제4조(장애인정책책임관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정책책임관으로 지정된 사람은 제3 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제5조(한국장애인개발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제38 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본다.

- ②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은 설립등기일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을 승계하며, 그 권리·의무 및 재산에 관한 등기 부 및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명의는 한국장애인 권리보장원의 명의로 본다.
- ③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
- ④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 법 시행 후 12개월 이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관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